



세입자가 집주인의 허가 없이 주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?

선택 사항

- 세입자가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소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- 집주인은 세입자가 주택의 사소한 변경을 실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나, 특정한 상황에서나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.

의견을 알려주세요

- 세입자가 주택에 대해 어떤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까요(예: 페인트칠, 액자용 걸이 설치, 난간 설치)?
- 사소한 주택 변경에 대한 세입자의 요청을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경우는 언제일까요?
-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주택 복구 비용을 충당하게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"주택 변경 보증금" 지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요?
- 주택 변경 보증금이 도입된다면 적정 액수는 얼마일까요?

의견 개진 방법은 간단합니다!

의견 제출:



consultations@dmirs.wa.gov.au

주택임대차법(RTA) 검토에 대한 자세한 안내:



www.commerce.wa.gov.au/tenancyreview



1300 304 054

Government of Western Australia

Department of Mines, Industry Regulation and Safety

Consumer Protection

Advice Line 1300 304 054
(for the cost of a local call statewide)

8.30am – 5.00pm Mon, Tue, Wed and Fri

9.00am – 5.00pm Thurs

Gordon Stephenson House

Level 2/140 William Street

Perth Western Australia 6000

Administration: (08) 6251 1400

Facsimile: (08) 6251 1401

National Relay Service: 13 36 77

Online

Website: www.dmirs.wa.gov.au

Email: consumer@dmirs.wa.gov.au

Mailing address

Locked Bag 100

East Perth WA 6892

Regional offices

Goldfields/Esperance (08) 9021 9494

Great Southern (08) 9842 8366

Kimberley (08) 9191 8400

Mid-West (08) 9920 9800

North-West (08) 9185 0900

South-West (08) 9722 2888



National Relay Service: 13 36 77

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(TIS) 13 14 50

This publication is available in other formats
on request to assist people with special needs.

